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 근거 마련〉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67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이만회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2025. 2. 19.

다. 회 부 일: 2025. 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관광단지는 공공편익시설 등을 갖춘 총 면적이 50만㎡이상인 대규모인 지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한편,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함)에 한해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되어 2025년 4월 23일 시행 예정임.

이에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정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또한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Ⅲ. 검토의견

1.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488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20488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 ⑥ (생략)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인구감소지역</u> 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	⑦ ----- ----- ----- <u>인구감소지역</u>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촌구조전환 우선지역에----- -----

<u>구감소지역</u>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⑧ (생략)	----- ----- -----<u>인구감 소지역 또는 농촌구조전환우선 지역</u>을----- -----. ⑧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지역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사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관광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제도를 두고, 관광지 및 관광지 지정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관광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고,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해 민관 혼합 또는 민간 주도로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으로서 지정기준, 규모, 및 사업주도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음.

1)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제도 개요 >

구 분	관광지	관광단지
정의 (법 제2조)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고 관광객을 위한 <u>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u> (지자체 개발 주도)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u>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u> (민관 혼합 또는 민간 주도 방식)
지정 기준	○ 면적기준: 해당없음 ○ 시설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8)에 따른 공공편의시설 구비	○ <u>면적기준: 50만㎡ 이상</u> ○ <u>시설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8)에 따른 공공편의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1종 이상, 운동·오락시설 또는 휴양·문화 시설 중 1종 이상 구비</u>
지정절차 (법 제52조)	시장·군수·구청장 신청 → 시·도지사 지정 * 지정 전 문체부 사전협의 필요	좌 동
사업시행자 (법 제54조)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관광공사 등 공공법인, 민간개발자
세제 지원 등 (개별법)	① 개발부담금 면제 ②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업진흥지역밖에 한함) ③ 대체초지조성비 면제 ④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30% 이내) ⑤ 대체산림조성비 면제 (준보전산지, 50만㎡ 이상 관광지에 한함)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대체산림조성비 면제 (준보전산지에 한함) ⑥ 취득세 일부 감면(50% 이내)
지정현황 (’25.5.)	225개소 (전체 118km ² , 1개소 평균 약 52.4만㎡)	55개소 (전체 161km ² , 1개소 평균 약 293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이와 관련하여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지난 2024년 10월 개정을 통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일정한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의 근거가 마련되었
고,²⁾ 해당 조항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촌
구조전환우선지역³⁾도 추가하여 농촌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은 지난 2024년 8월 30일 발의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431
호,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에서 그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
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
촌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인구 유입 등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음.

2) 「관광진흥법」 [시행 2025.4.23.] [법률 제20488호, 2024.10.22., 일부개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신설 2024.10.22.>

⑧ 제7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 지정취소 및 면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신설 2024.10.22.>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신설>	제48조의2(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① <u>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인구 유입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u>

- 따라서, 개정안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431호,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 심사 결과에 따라 논의되어야 할 것임.
- 다만,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 제도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에 따르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은 ‘인구구조 변화’와 ‘농업 기반 변화’를 기준으로 농촌 부문에 특화된 지표를 구성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고 있는 것과 달리 농촌구조전

환우선지역은 읍·면 단위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 제도가 시행될 경우 농촌구조전환우
 선지역과 기존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
 도록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비교 >

구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인구감소지역																													
법적 근거	- (개정 추진중)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정 목적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전제로서 <u>농촌 특성 (농업 기반, 인구 등)을 고려</u> 하여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	<u>전국 차원의 인구 감소</u> 및 불균형 심화에 따른 <u>지역소멸이 우려</u> 되는 지역(시·군·구)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행·재정적 지원 시책 추진																													
지정 대상	<u>읍·면(962개*)</u> * 전체 1,404개 읍·면 중 ‘인구감소지역(876개) 및 관심지역(86개)’ 내 읍·면	<u>시·군·구(229개)</u>																													
분석 기준 (안) 추후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변동가능	<table><tr><th>구성요소</th><th>지표</th></tr><tr><td rowspan="3">농업* 부문</td><td>농업경영자 수 변화율</td></tr><tr><td>50세 미만 농업경영자 비율</td></tr><tr><td>경지면적 변화율</td></tr><tr><td rowspan="3">인구 부문</td><td>인구변화율</td></tr><tr><td>인구 규모</td></tr><tr><td>고령화율</td></tr></table> * 농림어업총조사(통계청) 참고	구성요소	지표	농업* 부문	농업경영자 수 변화율	50세 미만 농업경영자 비율	경지면적 변화율	인구 부문	인구변화율	인구 규모	고령화율	<table><tr><th colspan="2">구성요소</th><th>지표</th></tr><tr><td rowspan="8">인구 여건</td><td rowspan="2">인구변화</td><td>조출생률</td></tr><tr><td>청년 순 이동률</td></tr><tr><td rowspan="2">인구 규모 변화</td><td>장기(2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td></tr><tr><td>중기(5년) 연평균 인구증감률</td></tr><tr><td rowspan="2">인구구조</td><td>유소년 비율</td></tr><tr><td>고령화 비율</td></tr><tr><td rowspan="2">도시 인구특성</td><td>인구밀도</td></tr><tr><td>주간인구</td></tr><tr><td>재정 여건</td><td>재정력</td><td>재정자립도</td></tr></table>	구성요소		지표	인구 여건	인구변화	조출생률	청년 순 이동률	인구 규모 변화	장기(2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	중기(5년)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구조	유소년 비율	고령화 비율	도시 인구특성	인구밀도	주간인구	재정 여건	재정력	재정자립도
	구성요소	지표																													
농업* 부문	농업경영자 수 변화율																														
	50세 미만 농업경영자 비율																														
	경지면적 변화율																														
인구 부문	인구변화율																														
	인구 규모																														
	고령화율																														
구성요소		지표																													
인구 여건	인구변화	조출생률																													
		청년 순 이동률																													
	인구 규모 변화	장기(2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																													
		중기(5년)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구조	유소년 비율																													
		고령화 비율																													
	도시 인구특성	인구밀도																													
		주간인구																													
재정 여건	재정력	재정자립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4. 10. 28. 제출)

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431호, 이만희의원 대표발
의) 검토보고(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발췌

○ 문화체육관광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개정된 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비교 검토하여 관련 개발 수요, 학계·업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7

참고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관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 범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외 관심지역* 등을 포함할 계획

【관심지역 개요】

※ 관심지역 지정

- 관심지역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제3호상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전체 18개 시·군·구 지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 인구감소지역 관련 재정적 지원의 경우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함(「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제1항)

< 참고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호)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인구감소지수"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값을 말한다.
3. "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4. "조합"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별표 1] 관심지역(제2조제3호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구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인천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익산시
광주광역시	동구	경상북도	경주시, 김천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중구	경상남도	사천시, 통영시
경기도	동두천시, 포천시		